
 <b>한국소비자원</b> Korea Consumer Agency	<h1>보도자료</h1> <p>“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”</p>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 된 열정</b> <b>하나 된 대한민국</b> 	
<b>이 자료는 11월 24일(금)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[방송인터넷 매체는 11월 23일(목) 12시]</b>			
<b>배포일</b>	2017년 11월 22일(수) (총 9쪽)	<b>담당부서</b>	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
		<b>담당자</b>	김병법 팀장 (043-880-5831) 최주승 대리 (043-880-5834)

## 고속도로 졸음쉼터 진·출입로 짧고 안전사고 위험 높아

- 안전·편의시설도 미비해 시설 보완 시급 -

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.

이는 한국소비자원(이하 소비자원)이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 졸음쉼터 45개소\*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.

\* 교통량 상위 5개 고속도로(경부선·영동선·서해안선·중앙선·남해선) 졸음쉼터, 민자 노선 졸음쉼터, 사고다발 졸음쉼터

### □ 10명 중 1명은 졸음쉼터 이용 중 추돌·충돌사고 경험

응답자들은 주로 ‘오후 2~4시’(200명, 40.0%) 사이에 ‘수면’(242명, 48.4%)을 목적으로 ‘2~3시간 운전 시 1회’(380명, 76.0%)의 빈도로 ‘5~15분’(215명, 43.0%) 정도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500명 중 48명(9.6%)은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, 보행자, 시설물과의 ‘추돌·충돌사고 경험’이 있었고, 353명(70.6%)은 안전시설 미비로 ‘사고위험을 느낀 것’으로 나타났다.

### □ 대부분 진·출입로 짧고 좁아 사고 위험 높아

한편, 조사대상 45개소 중 35개소(77.8%)는 ‘진입로 길이’가, 42개소(93.3%)는 ‘진출로 길이’가 「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(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-167호, 이하 ‘지침’)상의 기준보다 짧아 졸음쉼터 진·출입시 고속도로 본선 주행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.

또한, 7개소(15.6%)는 ‘진·출입로 폭’이 「국토교통부 도로설계편람(2012.4.)」에 따른 기준(3.25m)보다 좁아 졸음쉼터 내 주차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·충돌사고 위험이 있었다.

## □ 대다수 졸음쉼터 안전시설 미비해

‘지침’에 따른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‘과속방지턱’(31개소, 68.9%), ‘주차차량 보호시설’(18개소, 40.0%), ‘CCTV’(23개소, 51.1%) 등이 상당수 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, ‘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공간’은 모두 미설치되거나 폭이 좁아 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## □ 필수 편의시설 없는 졸음쉼터 많아

졸음쉼터의 주 방문목적인 ‘화장실’은 20개소(44.4%)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, 9개소(20.0%)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‘파고라’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. 현재 중·대형 졸음쉼터\*에만 ‘파고라’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형 졸음쉼터에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.

\* 주차면수에 따른 졸음쉼터 규모 : 소형 10면 이하, 중형 11~29면, 대형 30면 이상

## □ 졸음쉼터 시설관리 강화 필요

‘지침’에는 졸음쉼터 내 시설 점검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관리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. 그러나 22개소는 ‘화장실 관리 점검표’만 비치\*되어 있었고, 조사대상 45개소 모두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.

\* ‘화장실 관리 점검표’가 비치된 22개소 중 5개소(22.7%)는 점검 주기(1개월) 초과

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 졸음쉼터 내 안전·편의시설 보완과 관리·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▲안전시설 보완 ▲편의시설 설치 확대 ▲시설 관리·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.

## < 붙임 >

### 1 정의 및 현황

- '졸음쉼터'는 「도로법」 제2조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임.
- 진입로, 진출로, 주행로, 주차장, 편의시설, 안전시설로 구성되어 있음.
- 본선 교통량 및 예상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주차면수에 따라 소형, 중형, 대형 졸음쉼터로 구분되며,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본 편의시설과 권장시설이 상이함.

#### [ 졸음쉼터 편의시설 설치 기준 ]

구분	졸음쉼터 규모		
	소형 (주차면 10면 이하)	중형 (주차면 11~29면)	대형 (주차면 30면 이상)
화장실	기본시설	기본시설	기본시설
여성화장실 비상벨			
방법용 CCTV			
조명시설			
벤치 및 파고라	권장시설	권장시설	권장시설
차양시설(수목식재)			
사고시 대처안내판			
자판기	-	-	-
운동시설			

- 2017년 6월말 기준 총 23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.
- 일반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이며<sup>1)</sup>, 민자 고속도로는 각 노선별 운영주체(민간사업자)가 관리·운영 중임<sup>2)</sup>.

#### [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현황 ]

구분	노선명 / 설치개수									합계
	경부선	영동선	서해안선	중앙선	남해선	고창 담양선	광주 대구선	남해 1지선	남해선 (영암순천)	
일반 고속도로	24	15	21	13	12	4	6	2	4	216
	당진 대전선	대구 포항선	대구남부 순환선	동해선	서울 양양선	서울외곽 순환선	서천 공주선	울산선	익산 장수선	
	1	2	1	3	2	7	2	2	4	
	제2중부선	중부내륙선	중부선	청주 상주선	청주영덕선	통영대전선	평택제천선	호남선	호남지선	
2	16	18	5	5	15	4	20	6		
민자 고속도로	중앙선 (부산-대구)	논산 천안선	서울양양선 (서울-춘천)	광주 원주선	동해선 (부산-울산)	평택 시흥선	서울외곽 순환선 (일산-포천)	상주 영천선	세종포천선 (구리-포천)	19
	2	2	3	2	2	1	1	4	2	
합계										235

\* 출처 : 한국도로공사 및 각 민자 고속도로 홈페이지

1) 「도로법」 제2조(정의) 제5호 및 제23조(도로관리청)  
2)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6조(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)

## 2 관련 규정

### □ 「도로법」

- 졸음쉼터는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,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(제2조 제2호 바목)
- 고속도로에 연결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(제47조의2 제1항)

### □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 제223호)」

-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설치·관리해야 하는 도로안전시설\* 지정(제38조의2)
  - ※ 과속방지시설, 속도제한표지, 노면요철포장, 점멸식 신호등, 감속유도 차선,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
### □ 「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(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-167호)」

-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
### □ 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(국토교통부 예규 제146호)」

- 시선유도시설,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

### 3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

#### [조사개요]

- (조사대상) 최근 3개월 이내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한 운전자 500명
- (조사목적)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실태 및 안전의식 조사
- (조사기간) 2017.8.30.~9.3.
- (조사방법) 온라인 설문조사
- (신뢰수준) 95%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±4.38%

□ (이용실태) 응답자들은 주로 '오후 2~4시'(200명, 40.0%) 사이에 '수면'(242명, 48.4%)을 목적으로 '2~3시간 운전 시 1회'(380명, 76.0%)의 빈도로 '5~15분'(215명, 43.0%) 정도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주 이용목적은 '수면' 242명(48.4%), '가벼운 운동' 117명(23.4%), '화장실 이용' 113명(22.6%), '흡연' 17명(3.4%), '기타' 11명(2.2%) 순으로 답변함.

#### [ 졸음쉼터 이용목적 ]

[단위 : 명, (%)]

구분	수면	가벼운 운동	화장실	흡연	기타*	합계
응답자 (비율)	242 (48.4)	117 (23.4)	113 (22.6)	17 (3.4)	11 (2.2)	500 (100.0)

\* 차량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주차(3명), 통화(3명), 휴식(3명) 등

- 주 이용 시간대는 '오후 2~4시' 200명(40.0%), '오후 4~6시' 64명(12.8%), '정오~오후 2시' 52명(10.4%) 등의 순으로 조사됨.

#### [ 졸음쉼터 이용시간대 ]

[단위 : 명, (%)]

시간대	자정~ 오전 2시	오전 2~4시	오전 4~6시	오전 6~8시	오전 8~10시	오전 10시~정오	정오~ 오후 2시	오후 2~4시	오후 4~6시	오후 6~8시	오후 8~10시	오후 10시~자정	합계
응답자 (비율)	23 (4.6)	15 (3.0)	13 (2.6)	10 (2.0)	6 (1.2)	12 (2.4)	52 (10.4)	200 (40.0)	64 (12.8)	32 (6.4)	39 (7.8)	34 (6.8)	500 (100.0)

- 이용시간은 '5~15분 미만' 215명(43.0%), '15~30분 미만' 179명(35.8%), '30~45분 미만' 50명(10.0%), '5분 미만' 33명(6.6%), '45분~1시간 미만' 19명(3.8%), '1시간 이상' 4명(0.8%)의 순으로 나타남.

#### [ 졸음쉼터 이용시간 ]

[단위 : 명, (%)]

이용시간	5분 미만	5~15분 미만	15~30분 미만	30~45분 미만	45분~1시간 미만	1시간 이상	합계
응답자 (비율)	33 (6.6)	215 (43.0)	179 (35.8)	50 (10.0)	19 (3.8)	4 (0.8)	500 (100.0)

- 운전시간 대비 이용빈도는 주로 '2~3시간 운전 시 1회 이용'하는 것으로 나타남.

### [ 운전시간 대비 졸음쉼터 이용주기 ]

[단위 : 명, (%)]

운전시간	1시간	2시간	3시간	4시간	5시간	6시간	7시간	8시간	10시간	합계
응답자 (비율)	10 (2.0)	190 (38.0)	190 (38.0)	71 (14.2)	26 (5.2)	3 (0.6)	2 (0.4)	2 (0.4)	6 (1.2)	500 (100.0)

- (사고발생·위험) 조사대상 500명 중 48명(9.6%)은 차량(10명, 2.0%), 보행자(11명, 2.2%), 시설물(27명, 5.4%)과 '추돌·충돌사고 경험'이 있었음.
- 353명(70.6%)은 차량(191명, 38.2%), 보행자(106명, 21.2%), '시설물'(56명, 11.2%)과의 '사고위험을 체감'한 것으로 나타남.

### [ 졸음쉼터 내 사고발생 및 사고위험 체감 ]

[단위 : 명, (%)]

구분	차량	보행자	시설물	합계
사고발생	10 (2.0)	11 (2.2)	27 (5.4)	48 (9.6)
사고위험 체감	191 (38.2)	106 (21.2)	56 (11.2)	353 (70.6)

- (진·출입 안전성) 500명 중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진·출입로의 길이가 짧고 폭이 좁다고 응답함.

### [ 진·출입 안전성 ]

[단위 : 명, (%)]

진·출입시 안전문제	전혀 그렇지 않다	별로 그렇지 않다	보통 이다	약간 그렇다	매우 그렇다	합계
진입하는 도로의 길이가 짧아 충분한 감속을 하기 어렵다.	6 (1.2)	58 (11.6)	127 (25.4)	230 (46.0)	79 (15.8)	500 (100.0)
진입하는 도로의 폭이 좁아 원활한 진입이 힘들다.	7 (1.4)	72 (14.4)	136 (27.2)	226 (45.2)	59 (11.8)	
진출 도로의 길이가 짧아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충분한 가속을 하기 어렵다.	4 (0.8)	31 (6.2)	105 (21.0)	254 (50.8)	106 (21.2)	
진출 도로의 폭이 좁아 원활한 진출이 어렵다.	7 (1.4)	43 (8.6)	150 (30.0)	241 (48.2)	59 (11.8)	

- (편의시설) 500명 중 327명(65.4%)은 설치가 필수적인 편의시설에 대해 '화장실'이라고 답변함.

[ 졸음쉼터 필수 편의시설 ]

[단위 : 명, (%)]

필수 편의시설	화장실	자판기	휴지통	흡연구역	벤치	운동기구	계
응답자 (비율)	327 (65.4)	71 (14.2)	31 (6.2)	30 (6.0)	24 (4.8)	17 (3.4)	500 (100.0)

- (관리실태) 조사대상자 대다수는 졸음쉼터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거나 보통이라고 답변함.

[ 졸음쉼터 편의시설 관리실태 ]

[단위 : 명, (%)]

편의시설	관리인식						계
	매우미흡	미흡	보통	잘 됨	매우잘됨		
화장실	75 (15.0)	181 (36.2)	192 (38.4)	50 (10.0)	2 (0.4)	500 (100.0)	
흡연구역	55 (11.0)	191 (38.2)	224 (44.8)	30 (6.0)	-		
휴지통	48 (9.6)	184 (36.8)	223 (44.6)	42 (8.4)	3 (0.6)		
운동기구	52 (10.4)	182 (36.4)	231 (46.2)	32 (6.4)	3 (0.6)		
자판기	37 (7.4)	176 (35.2)	241 (48.2)	41 (8.2)	5 (1.0)		
벤치	31 (6.2)	159 (31.8)	266 (53.2)	42 (8.4)	2 (0.4)		

<참고>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발생사례(출처 : 한국도로공사)

- 2014.12.8. 졸음쉼터로 진입하는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정차중인 차량과 추돌사고 발생
- 2015.4.12. 졸음쉼터에서 휴식 후 출발하는 차량이 다른 출발 차량 측면과 추돌하여 사고(부상) 발생
- 2016.3.26. 졸음쉼터 내 주차된 버스에서 하차중인 승객이 휴식 후 출발하던 차량에 상해를 입은 사고(부상) 발생



## 4

## 시설안전 실태조사 결과

## [조사개요]

- (조사대상) 교통량 상위 5개 고속도로(경부선·영동선·서해안선·중앙선·남해선) 졸음쉼터, 민자 노선 졸음쉼터, 사고다발 졸음쉼터 등 총 45개소
- (조사내용) 진·출입로 길이, 폭, 안전·편의시설 설치여부, 관리실태 등

□ (진·출입로) 조사대상 졸음쉼터의 절반이상은 진·출입로 길이가 짧거나 도로 폭 및 갓길 설치기준에 부적합했음.

- (진입로 길이) 35개소(77.8%)는 진입로의 총 길이가 기준에 부적합(미달)했음.

## [ 부적합 진입로 현황 ]

[단위 : 개소, (%)]

설계속도 (km/h)	기준길이 (m)	미달길이(m)				합계
		5~30	31~60	61~90	91~120	
100	215	9(25.7)	8(22.9)	3(8.6)	2(5.7)	22(62.9)
110	240	2(5.7)	4(11.4)	4(11.4)	3(8.6)	13(37.1)
합계		11(31.4)	12(34.3)	7(20.0)	5(14.3)	35(100.0)

- (진출로 길이) 42개소(93.3%)의 진출로 총 길이가 기준에 부적합(미달)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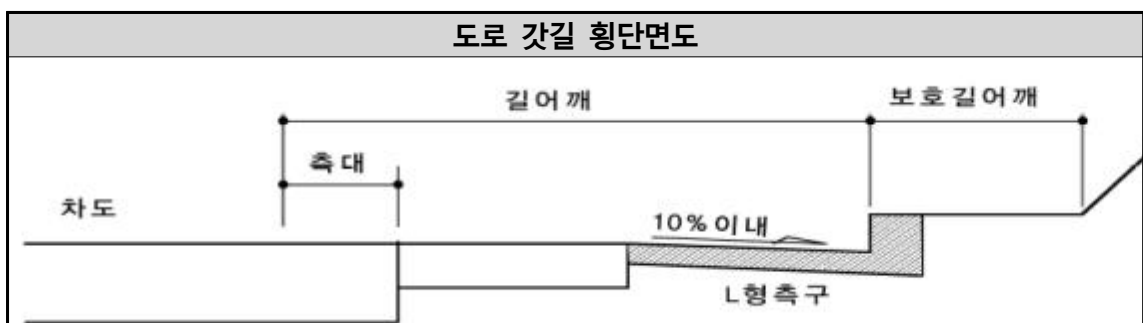
## [ 부적합 진출로 현황 ]

[단위 : 개소, (%)]

설계속도 (km/h)	기준길이 (m)	미달길이(m)						합계
		5~50	51~100	101~150	151~200	201~250	251~300	
100	370	1(2.4)	4(9.5)	9(21.4)	8(19.0)	2(4.8)	2(4.8)	26(61.9)
110	440	1(2.4)	0	0	6(14.3)	6(14.3)	3(7.1)	16(38.1)
합계		2(4.8)	4(9.5)	9(21.4)	14(33.3)	8(19.0)	5(11.9)	42(100.0)

- (진입로 폭·갓길\*) 7개소(15.6%)는 폭 설치기준(3.25m)<sup>3)</sup>에 부적합(미달)했고, 17개소(37.8%)는 갓길 설치기준(0.5m)<sup>4)</sup>에 부적합(미달)하거나 미설치됨.

\* 길어깨 또는 노견(路肩)이라고도 함



3) 국토교통부, 「도로설계편람」(2012.4.)

4) 「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」 제12조 제2항



- (진출로 폭·갓길\*) 7개소(15.6%)는 폭 설치기준(3.25m)에 부적합(미달)했고, 14개소(31.1%)는 갓길 설치기준(0.5m)에 부적합(미달)했음.

\* 진입로 폭·갓길 설치기준과 동일

- (안전시설) 대다수의 졸음쉼터 내 여성화장실 비상벨, 과속방지턱, 주차차량 보호시설, CCTV, 보행자 안전공간 등 안전시설이 미비함.

### [ 부적합 안전시설 현황 ]

[단위 : 개소, (%)]

원호형 과속방지턱	주차차량 보호시설	CCTV	여성화장실 비상벨	보행자 안전공간
31 (68.9)	18 (40.0)	23 (51.1)	33 (73.3)	45 (100.0)

- (편의시설) 20개소(44.4%)는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,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도 9개소(20.0%)에 미설치됨.

### [ 편의시설 설치 현황 ]

[단위 : 개소, (%)]

화장실 미설치	파고라 미설치*
20 (44.4)	9 (20.0)

\* 다만, 현재 파고라 의무설치 대상은 중·대형 졸음쉼터에 한함.

- (점검표)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었음. 다만, 22개소는 화장실 내에 '화장실 관리 점검표'가 비치되어 있었으나, 이 중 5개소는 최종 점검일로부터 1개월(점검 주기)을 초과하였음.
- (관리상태) 일부 졸음쉼터는 청소 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이 파손되어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음.

